

## B-17 : 고용보험 가입 및 종료

### 1. 용어의 정의

#### (1) 일괄적용 사업장

개별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주된 사업장에서 일괄 고용보험 성립·보고·납부(소멸신고 현장시행)하는 사업장.

#### (2) 현장 상용 근로자

현장 업무 수행 상 임시로 채용된 근로자(임시원)로서 업무를 보조하거나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는 자.

#### (3) 피보험대상 현장일용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 및 임시직 근로자,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주당18시간이상 30.8시간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 (4) 미승인 하수급자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지 않은 하수급자.

## 2. 고용보험료의 산정방법 및 부담자별 정리

사업별	보험료산정	부담자	사업별 공제대상/적용제외자 정리	기 타 적용제외근로자
(1) 실업 급여	피보험자임금 총액*보험요율	근로자 0.5% 사업주 0.5%	1. 80시간 이상근무 ① 1개월미만인자-실업급여제외 ② 1개월미만인자-고용/직능대상	1. 60세이후신규채 용자 2. 65세이상도달자 (노동부 직권상실) (64세에 속하는 달 부터 보험료 징수 면제)
(2) 고용 안정 사업	피보험자임금 총액*보험요율	사업주 0.3%	2. 80시간 미만근무 무조건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능개발 전부제외 3. 1개월이상 근무의 구분 80시간이상이고 1개월미만일 경우 - 다음월에 계속근무할 경우 1개월이상 인 자로 본다.	
(3) 직업 능력 개발 사업	피보험자임금 총액*보험요율	사업주 0.7%	4. 계속근로중 80시간미만인 경우가 간 헐적으로 발생할 경우 당월은 실업급여 대상으로 본다. 5. 고용기간 유무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 용결과에 의하여 계산한다.	

## 3. 피보험자 관리

### (1) 자격관리

피보험자가 입사·퇴사·전근 등으로 피보험자격이 취득·상실(이직확인서 신고)·변경되는 사항을 관리하는 것으로 고용보험료의 징수 및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중요한 사전 절차이다.

### (2) 피보험자와 적용제외 근로자

#### 1. 80시간 이상근무

- ① 1개월 미만인 자-실업급여 제외
- ② 1개월 미만인 자-고용/직능 적용 됨

#### 2. 80시간 미만근무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능개발 3사업 모두 제외

### 3. 1개월이상 근무의 구분

80시간이상이고 1개월미만일 경우 - 다음 월에 계속 근무할 경우 1개월이상인  
자로 본다.

4. 계속근로중 80시간미만인 경우가 **간헐적**으로 발생할 경우 당월은 실업급여대상  
으로 본다.

5. 고용기간 유무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결과에 의하여 계산한다.

#### (4) 피보험 자격상실일

퇴직의 경우는 퇴직한 다음날, 사망의 경우는 사망한 다음날, 65세에 도달한 날 (노  
동부 직권상실)

#### (5) 피보험자 전근신고

다른 사업장으로의 근로자가 전근시에는 전근일로부터 14일이내에 전근된 사업장에  
서는 전근소재지 관할 노동관서에 고용보험피보험자전근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전근 전·후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가 동일할 지라도 사업장관리번호가 다  
르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 (6) 피보험자 변경신고

피보험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 또는 정정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4  
일이내에 공문으로 관할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4. 하수급인 실업급여 원천공제

### (1)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제9조5항)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  
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용보험법상의 각종  
권리·의무를 원수급인에게 부과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하수급인이 고용한 피보험  
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는 하수급인이 직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13조 제2항),이들 피보험자가부담해야 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는 하수급인이 직접  
원천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59조 제3항)

### (2) 하수급인 실업급여 원천공제분 확인방법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실업급여보험료의 원천공제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이 고용한 피보험자수,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액, 원천공제한 금액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항과 같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① 하수급인은 “하수급인피보험자원천공제부”을 작성비치하고,매월 피보험자수,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 원천공제한 금액등을 기재하여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 ② 하수급인은 원수급인에게 원천공제한 보험료를 인도할 때마다 “하수급인 피보험자원천공제액인도서“를 작성, 원수급인과 하수급이 서명·날인토록 한다.
- ③ 원수급인은 “하수급인피보험자원천공제액수령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매월 하수급인별로 “하수급인피보험자원천공제부”양식에 의하여 인도받은 사항을 기재하여 비치토록 한다.

## 5. 하수급인 사업주인정승인 신청

### (1) 의 의

원수급인이 법 제9조제5항단서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에게 보험료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고용보험법상 사업주가 되어 사업주로서의 권리·의무를 부담하게 하도록 한다.

단,하수급인 사업주인정승인은 당해 보험년도 개시일(매년 1월1일)부터 70일 이내에 하여야 이의 인정승인이 가능하다.

### (2) 하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요건(필요충분조건)

- ①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일 것
- ②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하도급공사의 도급공사금액이 6억원 이상일 것
- ③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보험료미납부시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 ④ 하수급인의 사업이 보험료 및 실업급여·지원금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
- ⑤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신청은 당해보험년도 개시일부터 70일이전에 취해질 것

### (3) 하수급인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인정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은 보험료의 납부 등 법에 의한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사업주는 보험료의 납부와 피보험자 관리업무수행에 지

장이 없도록 다음의 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① 근로자명부 및 출근부
- ② 임금대장
- ③ 기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

(4) 하수급인 관리 주체

고용보험에 있어 하수급인은 현장관리책임자 또는 노무담당자의 책임하에 관리되어야 한다.

## 6. 고용보험적용시 유의 사항

(1)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등에 대한 적용

조립식의 건물구성품 또는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주가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치공사는 이를 당해 제품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건설공사(현장)에서의 고용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 ① 제조,판매한 제품이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하는 것일 것.
- ② 도급단위별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 부문의 도급금액보다 클 것
- ③ 도급단위별 제조부문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설치공사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보다 클 것.
- ④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닐 것.

(2) 건설장비 임대업의 적용

건설용 기계·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주가 동 기계·장비의 조작을 위하여 근로자(운전원, 수리공, 기술자)를 함께 파견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는 파견된 건설공사의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다만, 도급건설업자가 도급건설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기계장비로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적용한다.